

식약처, 반복적 법 위반 해썹(HACCP) 업체 식품안전 특화교육 실시

- 연 2회 이상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 식품안전 특화교육(5시간) 실시
- 해썹 업체의 안전관리 인식·역량 강화, 위반 사례 재발 및 식품위해사고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썹(HACCP)*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해썹 운영·관리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연 2회 이상)으로 위반하는 해썹 인증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
-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그간 식약처는 해썹 관리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미실시 등 주요 안전관리 조항 위반업체에 대해 해썹을 즉시 인증 취소하고, 그 외 법령을 위반한 해썹 인증 업체는 현장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일부 기준·규격이나 표시 기준 위반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 ('22) 96곳(전체 해썹 업체의 0.5%) → ('23) 106곳(0.5%) → ('24) 73곳(0.3%)

이에 식약처는 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법령 위반 재발과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해썹 인증 업체의 영업자 또는 해썹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4

교육 내용은 ▲올바른 해썹 운영·관리 ▲식품 관련 법령 ▲식품 안전문화 개선이며, 해썹 관리는 물론 식품 안전 문화 현장 정착 방안과 주요 법령 위반 사례, 표시 기준, 이물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식약처로부터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고지받은 영업자(또는 해썹팀장)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실시하는 5시간의 교육훈련을 당해 연도 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해썹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에도 교육 미이수 시 해썹 인증 취소

교육과목	주요 내용	시간
▲올바른 HACCP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의 필요성과 이점 • 올바른 선행요건과 HACCP의 이해 • 성공적 HACCP 운영을 위한 영업자 역할·의지 	1.5H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위반 사례 및 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등 표시 기준 및 이물 관리 *교육 대상 업체의 법 위반 사례 중심 	2H
▲식품안전 문화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 문화의 개념 이해 • 식품 안전 문화의 개선 및 조직 내 확산 방법 	1.5H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인증 업체의 역량을 강화해 해썹 제품 및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 제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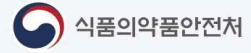
참고로, 교육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표 누리집(fresh.haccp.or.kr) → 교육 → 식품안전 특화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식품안전 특화교육’ 안내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책임자	과 장	마정애 (043-719-2851)
		담당자	사무관	최총렬 (043-719-2852)



국민 안전이 기준입니다



반복 법 위반 HACCP 인증 업체 대상으로 식품안전 특화 교육이 시행됩니다

* 교육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4

시행일자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교육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교육방법 집합교육 (필요 시 온라인 교육 개설), 5시간 (수수료 10만원)

교육횟수 연 4회 (분기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표 누리집(fresh.haccp.or.kr) ▶ 교육 ▶ 식품안전 특화 교육

교육대상 영업자 또는 HACCP 팀장

연 2회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체



재인증* 후 당해연도
법 위반한 업체

* 조사평가시 인증취소 후 재인증



★ 교육 명령 받은 업체는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수료

* 1차 교육 명령 미이행에 따른 2차 교육명령은 3개월 이내 교육 수료

교육내용

HACCP 관리
(1.5시간)



- HACCP의 필요성과 이점
- 올바른 선행요건 · HACCP의 이해
- HACCP 운영 위한 영업자의 역할과 의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2시간)



- 법위반 사례 분석 및 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 등 표시기준 및 이물 관리

식품안전문화
(1.5시간)



- 식품안전문화의 개념 · 이해
- 식품사고로 알아보는 식품안전문화 사례, 정착 방안 등

행정처분 미 이행시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진행.

2차 시정명령에도 미 이수시 HACCP 인증취소 처분

* 처분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0,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의 2